

채용공고

최저임금 연구위원 채용 공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최저임금법 제20조에 의하여 '최저임금 연구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0. 1. 13.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 본 채용은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채용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채용 분야별 주요 직무수행 내용과 요구되는 지식·기술·태도 등은 본문에 포함된 직무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

채용분야

구분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요 업무
공무직근로자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연구위원 (통계 분야)	1명	VI.근무조건 참조
공무직근로자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연구위원 (경제 분야)	1명	

* 근무지: 최저임금위원회(現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위치)

II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성별 및 연령		· 무관(단, 채용일 현재 정년(만60세) 미만자)	
병역		·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한 자 또는 면제된 자	
학력 및 전공	통계 분야	· 관련 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 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경제통계학, 응용정보통계학, 빅데이 터통계학, 수학통계학 등 통계 관련 학과 [관련분야] 국가·지자체, 민간연구기관·단체 등에 서의 통계 분석·관리 등

구 분		주 요 내 용	
학력 및 전공	경제 분야	· 관련 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 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학과] 경제학, 경제금융학, 국제경제학, 노동경제학, 산업경제학 등 관련학과 [관련분야] 국가·지자체, 민간연구기관·단체 등에서 의 경제 분야 연구 등
우대사항		· Ⅲ. 우대사항 참조	
기타		·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Ⅲ 우대사항

○ 공통

구 분	우 대 사 항
취업지원 대상자	· 각 법률에서 명시한 대로 서류 및 면접전형 시 만점의 5~10% 부여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장애인 및 저소득층	·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제10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세대주 (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

*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기준으로 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

○ 직무별

구 분	우 대 사 항
통계 분야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되는 관련 분야 경력(연차별 차등우대) · 관련 학과 석사·박사 학위(응시요건 초과 학위에 한함) · 관련 분야 논문·연구용역·저서 실적 · 사회조사분석사 1급·2급(둘 중 하나만 인정하며 종류별 차등 배점)
경제 분야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초과되는 관련 분야 경력(연차별 차등우대) · 관련 분야 석사·박사 학위(응시요건 초과 학위에 한함) · 관련 분야 논문·연구용역·저서 실적 · 사회조사분석사 1급·2급(둘 중 하나만 인정하며 종류별 차등 배점)

* 해당 경력은 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IV 전형절차 및 일정

○ 전형절차



- 응시자의 직무적합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선발하되, 최종선발인원의 7배수 범위 내에서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수행자로서의 직업기초능력, 직무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지원서 접수	'20.1.20.(월)~'20.1.30.(목)	• 채용담당자 e-메일(woohshit@korea.kr) 접수 • 접수마감일 18:00까지 수신(도달)된 지원서만 유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7.(금)	•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면접전형	'20.2.14.(금)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면접 일시 및 장소 공고 예정
최종합격자 발표	'20.2.20.(목)	• 최저임금위원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고
채용	'20.3.2.(월)	• 근로계약 체결 및 근무 개시(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지될 예정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 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 할 수 있음

V 접수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는 **채용담당자 이메일(woohshit@korea.kr)로만 접수**하고 기타 증빙서류 등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당일 제출

제출 서류	대상
· 입사지원서, 경험 또는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각 1부 ※ 붙임 서식을 사용하여 스캔파일로 제출하되 해당 서식이 아닌 임의 양식으로 제출 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함(불합격 처리)	원서접수 시 제출 (woohshit@korea.kr)
· 개인정보제공 활용 동의서(서명필수)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서명필수)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	면접 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제출 서류	대상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 증명서 각 1부(해당자)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 제출 · 직무분야 관련 논문, 저서 발간, 연구용역 실적 증명 자료 각 1부(해당자) ※ 관련 서류가 외국어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추가 제출 · 병적증명서 또는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취업보호·지원 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면접 시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 경력증명서는 해당 모집분야와 관련하여 근무한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되, 근무 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불명확한 경우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 기재사항 중 면접 당일까지 증명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 및 자격은 인정되지 않음
- ※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VI 근무조건

- 근무장소 : 최저임금위원회(現 세종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위치)
- 보수수준 : 기본급 월 2,626,000원, 기타 복리수당(정액급식비 월 13만원, 명절 상여금 연 80만원) 별도
- 근무시간 : 주5일(월~금, 9:00~18:00), 주40시간
- 주요업무
 - (통계분야) 최저임금 결정 기준 관련 주요 경제 지표 분석·보고서 작성, 외국의 최저임금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국제 기구에서 발표하는 국제통계자료 수집·분석, 각종 기관에서 발표하는 고용·경제동향 지표·통계 등의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조사·분석,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 등 실시, 심의기초자료 작성 및 위원회 운영 지원 등
 - (경제분야) 최저임금의 효과, 제도 개선 등 각종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 언론·학계·연구기관 등의 최저임금 관련 발표자료·논문 등 수집·분석(내·외부 보고서 및 연구기록 축적), 외국의 최저임금 국가별 자료 수집·검토, 기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관한 실태 분석

및 자료 수집, 심의기초자료 작성 및 위원회 운영 지원 등

- 계약기간 : 2020.3.2.(월)(예정)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예정(단, 수습기간 3개월)
- 그 밖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등에 따름

VII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간 (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첨부 4 서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인자(최저임금위원회)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 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및 누락,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신원조사 및 경력 조회 및 학위 검증,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되거나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합격이 취소되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결격사유(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제9조)**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7.1. 이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 : 연구위원(통계 분야) 】

채용 분야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통계 분야) (최저임금 관련 지표 조사·분석 및 위원회 심의 지원)			
NCS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 정보통신	01. 정보기술	01. 정보기술전략계획	05. 데이터분석
기관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심의 기초자료 조사·분석,			
주요사업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등 개최,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조사·연구			
직업 기초능력	통계분석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능력, 공직관(직업윤리)			
핵심직무	■ 최저임금 관련 통계 분석·정리 ■ 최저임금 결정기준 관련 각종 지표(경제성장률, 고용률, 실업률, 소비자 물가 등) 수집·검토, 통계적 의미 등 종합적 분석 ■ 국책연구기관·학회, 국제기구 등 최저임금 관련 발표자료 수집·분석·대응			
직무수행 내용	■ 최저임금 관련 통계 분석·정리 ■ 최저임금 결정기준 관련 각종 지표(경제성장률, 고용률, 실업률, 소비자 물가 등) 수집·분석 ■ 국책연구기관·학회, 각종 기관에서 발표하는 고용·경제동향 관련 지표·통계 등의 상시적인 모니터링·분석 ■ 외국의 최저임금 관련 통계자료 수집 및 OECD 등 국제기구에서 발표하는 국제통계자료 수집·분석·대응(연중, 수시) ■ 위원회(전문위원회, 연구위원회 포함) 운영 지원			
필요지식	■ 사회(고용·노동·복지 등) 통계 및 노동시장 동향 조사·분석 관련 지식 ■ 주요 정책 지표 및 경제·사회 통계 관련 지식 ■ 경제 관련 통계 및 연구결과 분석·해석 능력 ■ 데이터분석기법에 대한 지식			
필요기술	■ 통계 프로그램(SAS, SPSS, R 등)을 활용한 기초 및 시계열 분석 능력 ■ 대용량 데이터의 핸들링 및 프로그래밍(SQL, MACRO) 능력 ■ OA활용 및 문서작성 능력 ■ 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 능력			
직무수행 태도	■ 임무수행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태도(성실성) ■ 고객중심적인 사고 및 다양한 기술적 대안을 탐구하는 의지 ■ 각종 통계 정보 수집과 내용 확인 의지 ■ 대인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세와 커뮤니케이션 능력 ■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및 제도 개선 의지 ■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태도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자료 : 연구위원(경제 분야) 】

채용 분야	최저임금위원회 연구위원(경제 분야) (최저임금의 효과 등 심층 연구·분석 및 위원회 심의 지원)			
NCS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 경영·회계·사무	02. 총무인사	03. 일반사무	02. 사무행정
기관 주요사업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심의 기초자료 조사·분석, 최저임금제도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 등 개최, 외국의 최저임금제도 조사·연구			
직업 기초능력	문제해결능력, 의사소통능력, 정보능력, 공직관(직업윤리), 통계분석능력			
핵심직무	■ 최저임금 효과 등 각종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 ■ 언론·학계·연구기관 등의 최저임금 관련 발표자료·논문 등 수집·분석 ■ 외국의 최저임금 국가별 자료 수집·분석			
직무수행 내용	■ 최저임금 효과 등 각종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분석 ■ 언론·학계·연구기관 등의 최저임금 관련 발표자료·논문 등 수집·분석(연구기록 축적) ■ 외국의 최저임금 국가별 자료 수집·분석 ■ 기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관한 실태 분석 ■ 위원회(전문위원회, 연구위원회 포함) 운영 지원			
필요지식	■ 사회(고용·노동·복지 등) 통계 및 노동시장 동향 조사·분석 관련 지식 ■ 주요 정책 지표 및 경제·사회 통계 관련 지식 ■ 경제 관련 통계 및 연구결과 분석·해석 능력 ■ 데이터분석기법에 대한 지식			
필요기술	■ 업무 이해 능력 및 의사표현 능력 ■ 필요 정보 수집 및 분석 능력 ■ OA활용 및 문서작성 능력 ■ 데이터 분석 도구 활용 능력			
직무수행 태도	■ 임무수행을 통해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태도(성실성) ■ 고객중심적인 사고 및 다양한 기술적 대안을 탐구하는 의지 ■ 각종 통계 정보 수집과 내용 확인 의지 ■ 대인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세와 커뮤니케이션 능력 ■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태도 및 제도 개선 의지 ■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태도			
참고 사이트	■ www.ncs.go.kr			

【첨부 2】

NCS 기반 입사지원서

지원분야	☐ 연구위원(통계)	채용관서	최저임금위원회
	☐ 연구위원(경제)		

* 반드시 지원분야 1개를 선택하여 표기해 주십시오.

1. 인적 사항

* 인적 사항은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모든 항목을 기입해 주십시오.

성명		출생연도	
실거주지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우편	
	(비상연락처)		

저소득층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보호대상자 ☐ 비대상	장애인 여부	☐ 대상 ☐ 비대상	취업지원 대상여부	☐ 만점의10% ☐ 만점의5% ☐ 비대상
------------	---	-----------	---	--------------	---

2. 응시 자격

* 응시 자격은 필수 항목으로 반드시 해당 자격 1개를 선택하여 표기해 주십시오.

☐ 관련 학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관련 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교육 사항

(1) 학교교육

* 학교교육은 제도화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고등교육과정(대학교 이상)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질문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응시 분야 관련 취득 학위가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한 경우 해당하는 학위를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 [통계 분야] 경제통계학, 산업경제학, 경제통계학, 응용정보통계학, 빅데이터통계학, 수학통계학 등 관련 학과 학위

👁 [경제 분야] 경제학, 경제금융학, 국제경제학, 노동경제학, 산업경제학 등 관련 학과 학위

전공	학위종류	학위번호	학위취득일
〇〇학	학사		2017.12.31.
	석사		
	박사		

(2) 직업교육(직무관련 교육훈련)

* 직업교육은 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실업교육, 기능교육, 직업훈련 등을 이수한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질문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주시시오.

○ 관련 직업교육 과목을 이수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한 경우 해당하는 이수과목 내용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작성란이 부족한 경우 칸을 추가하여 작성)

과 정 명	주 요 내 용	교육기관	교육시간

4. 직무 관련 경력 혹은 경험 사항

* 직무관련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하고, **경험**은 직업 외적인(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팀 프로젝트 활동, 연구회 활동, 동아리/동호회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재능기부/봉사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4-1) 해당 직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혹은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한 경우 해당하는 사항을 기입하고, **경험 또는 경력 기술서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llegible]

4-2) 해당 직무 관련 논문 발표(발행)·저서 발간 실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한 경우 해당하는 사항을 기입하고, **경험 또는 경력 기술서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연구자	발표 논문지 (논문지 종류)	발행(발표)/ 연월일	등재구분 (SCI, SCIE, SSCI, A&HCI, SCOPUS, KCI 중 택1)
			yyyy/mm/dd	

4-3) 해당 직무 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예'라고 응답한 경우 해당하는 사항을 기입하고, **경험 또는 경력 기술서에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	연구자	주요 내용	발주 기관	용역 수행 기간
				yyyy/mm/dd ~ yyyy/mm/dd

5. 직무관련 자격 사항

* 직무와 관련된 아래 자격증 중 취득하신 자격을 기재해 주십시오.

☞ **해당 자격: 사회조사분석사 1급 또는 2급 등** → 같은 종류는 최상위 등급을 기재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경험 또는 경력 기술서

- *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경험 혹은 경력사항(논문 및 연구 실적 포함), 직무관련 기타 활동에 대해 상세히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 조직, 역할 및 구체적 활동 내용, 주요 결과에 대해 작성하고, 본인의 경력(또는 경험)이 지원 분야의 업무 수행과 어떠한 연관성·기여도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 소 개 서

1. [문제해결능력] 지금까지의 경험 중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적극적 노력이나 합리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해결했던 경험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300자 내외).
2. [의사소통능력] 지금까지의 경험 중 갈등이나 문제해결 과정에서 의사소통 역량을 발휘하여 상황을 개선한 사례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3. [업무정확성] 그 동안의 경험 중 정확한 업무 처리를 위해 꼼꼼한 자세로 수행하고, 성과를 보인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자 내외).
4. [공정성과 중립성] 지금까지의 경험 중 공정성과 중립의 자세를 갖고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작성해 주십시오. (300자 내외).
5. [조직이해도] 최저임금위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며, 입사 시 본인의 역할 또는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배(직무 수행 계획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300자 내외).

위와 같이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며, 일절 허위 기재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응 시 자 : (서명/인)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귀하

※ 분량은 A4 용지 2매 이내로 컴퓨터 문서편집 프로그램(한글)을 이용하여 작성·서명 후 스캔파일로 제출(pdf)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 (감점)을 받을 수 있음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 활용 동의서

구 분	수 집 정 보
입사지원자	○ 성명, 60세미만여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 장애 여부, 저소득층 여부 ○ 직무관련 경험·경력·자격·교육·연구실적 사항 ○ 자기 소개서
서류전형 합격자	○ 학위 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 취업지원대상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저소득층 확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병적증명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목적) 채용 심사에 필요한 인적사항 및 입증서류 확인, 채용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 조회
- (수집항목) 입사지원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 등 위 입사지
원자 수집정보), 서류전형 합격자(학위증명서 등 위 서류전형 합격
자 수집정보 중 해당정보)
- (보유·이용기간) 신규채용에 필요한 보존기한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채용시험에서
자료 미확인으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 . . .

성명

(서명)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귀하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연구위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귀하

【첨부 3】 취업지원 관련 법률

법률	조 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개정 2011.9.15.>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9.15.>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취업지원) ① 국가는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②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3.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그 손자녀의 자녀 1명. 이 경우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의 기준과 취업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순국선열의 유족 및 애국지사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법률	조 항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애국지사의 가족 나. 애국지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그 유족 다.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2. 재해사망군경 및 재해사망공무원의 배우자 3.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의 배우자 제35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3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취업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취업지원을 한다. 1. 수당지급 대상자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족 또는 유족 중 배우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배우자를 말한다) 3. 수당지급 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또는 유족 중 자녀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2.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법률	조 항
	4. 5·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제22조(채용시험의 가점 등)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2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임무부상자 및 특수임무공로자 2.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자녀 5. 특수임무부상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제24조(채용시험의 가점) ①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직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加點)하여야 한다. 1. 만점의 10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만점의 5퍼센트를 가점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가. 제1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의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 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점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換算)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29.> ④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할 때에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으면 동점자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첨부 4】 필요 시 채용 절차 종료 후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귀하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